

☎ 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6-4487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서형석(6535)/ E-mail: kma_sh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-14338호

시행일자 2022. 3. 2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안내 협조 요청 (중앙방역대책본부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7354(2022.2.27.)

3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사항 안내 협조를 요청해온 바,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귀회 소속 의료기관에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 변경사항

1. 관리 대상 구분 기준

-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

* 동거인이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(등원)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 지침에 따름

2. 관리 방식

- 보건소는 권고 및 주의 사항을 적시 안내하면서 준수 협조 요청, 진단검사 지원

- 대상자가 권고 및 주의사항 자율 준수

3. 검사 기준

- 1회 PCR(3일 이내) 및 1회 신속항원검사(6~7일차) 권고

* 60세 이상은 두번 모두 PCR 검사

나. 시행일 : 3.1.(화), 0시

다. 변경된 기준에 맞춰 '확진자 양성 통보' 및 '격리통지'시 사용하는 문자 참고

-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문자 일괄 전송 기능 사용법 별도 통지 예정

※ 붙임 : 1.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안내 공문 1부

2.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1부

3. 확진자 양성 통보 문자(안)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